주간건설 Review

575호 2019.3.29(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정몽규 HDC회장, 현대산업개발 신입사원과 오찬 간담회
- 태영그룹, 새 선장으로 세대교체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리뉴얼

▣ 건설경제 일반동향

- 예타면제·민자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
- 북한 인프라개발 10년간 306조원 필요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발표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 정몽규 HDC회장, 현대산업개발 신입사원과 오찬 간담회

○ 3월27일 정몽규 HDC 회장은 파크하얏트 서울에서 3월에 입사한 14명의 HDC현대산업개발 신입사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었음

○ 이날 정몽규 회장은 신입사원들에게 HDC그룹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10년간의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사 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독서 등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을 주문하였음



함께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는 정몽규 HDC 회장과 2019년 HDC현대산업개발 신입사원들

○ 이어진 오찬 과정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신입사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는 물론 함께 사진을 촬영하며 신입사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음

○ 그 동안 정몽규 회장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기업문화 해소를 위해 자유로운 토론 및 수평적인 회의 문화를 구현하는 이른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강조해왔음

◈ 태영그룹, 새 선장으로 세대교체

○ 3월25일 태영그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옥에서 그룹 계열사 및 관련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명예회장 추대 및 회장 취임식'을 열어 윤석민 부회장이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였음



윤세영 명예회장, 윤석민 회장, 이재규 부회장(사진 좌측부터)

○ 이날 윤석민 회장 취임과 함께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은 46년만에 회장직을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

으며, 이재규 태영건설 사장은 태영건설 부회장으로 승진하였음

○ 윤세영 태영그룹 명예회장은 1973년에 회사를 설립해 올해 현재까지 46년 동안 국내 도급순위 14위(2018년 기준)의 건설회사로 이끌었으며,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은 1988년 태영 기획담당이사로 입사해 2004년 태영건설과 태영인더스트리의 사장을 거쳐 2008년 태영건설과 태영인더스트리 부회장, 2009년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에 오르며 그룹을 이끌어 왔음

○ 한편,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은 1982년 태영 관리부이사로 들어와 개발사업본부장 전무이사, 기획관리본부장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 왔음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리뉴얼

○ 3월25일 현대건설은 기존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쓰이고 있는 로고를 한글 로고로 통일한다고 밝혔음

○ 브랜드 디자인 리뉴얼뿐만 아니라 브랜드 콘셉트를 다듬어 소비자들에게 힐스테이트만의 차별화된 가치 전달과 인지도 제고를 통해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



심벌이 강조되었던 시그니처 형식에서 벗어나 국문 로고타입 강조하는 시그니처로 브랜드 시인성 및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 힐스테이트 BI

○ 먼저 로고에 표기된 '힐스테이트' 글자를 기존보다 150% 확대해 소비자들이 브랜드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와인 색깔도 음영(그러데이션)을 없애고 단색으로 변경해 통일감을 줬음

○ 이번 브랜드 리뉴얼로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외벽으로, 영문 'Hillstate'로 표기됐던 브랜드명을 대표 로고와 통일해 한글로 바꿔 표기하고, 여기에 현대건설의 품질경영과 신뢰성을 상징하기 위해 현대건설의 로고도 함께 표기함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올해 하반기 분양에 나서는 모든 신규 단지에 이러한 브랜드 철학이 담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적용해 구현할 계획임

◈ 예타면제·민자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

○ 올해 들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24조원을 웃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발표한데 이어 사실상 접었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SOC에 부정적 기조를 유지해왔던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공공·민자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민자 활성화를 통해 기대하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요건이 필요하다는 평가

<주요내용>

❒ **계획발표와 실제 집행까지의 시차 축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과 조기 추진 민자사업이 실제 집행에 들어가기 까지는 적어도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차'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지 않는 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민자사업 활성화의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경우 아직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를 총사업비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도 피해 갈 순 없어 실제 집행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
-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선 시설사업기본계획(RFP)과 제3자 공고문 작성,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및 금융약정 체결 등 착공에 이르기 까지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이 과정에서도 돌발변수가 적지 않아 집행시기 예측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업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같은 경우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자사업도 공정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을 제외하고선 RFP 작성과 협상 등 평가 전후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실질적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일정의 구체화**

-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과 조기 추진 민자사업 중 상당수는 신규 물량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평가

-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철도의 경우 신안산선, 동북선 경전철, 도로는 평택~익산, 광명~서울, 만덕~센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이미 추진이 확정된 프로젝트들이어서 실질적인 신규사업은 부족하다는 것
- 위례~신사선, 승학터널, 오산~용인 고속도로 정도가 신규 물량이라고 할 수 있고,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신규 사업을 제안해야 하는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일 만한 인센티브는 부족한 것이 현실
- 업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신속한 민자 적격성조사 발표보다는, 정부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약속한 일정에 맞춰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활력을 물론 다양한 제안사업이 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

❐ 상충하는 제도·정책의 우선 순위 검토

-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경제성 분석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그러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국회 등에서 번번이 좌절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
- 민자제도도 대상시설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확대하고, 제안서 검토기관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으로 다원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자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음
- 실제 정부가 민자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실시협약 등 정보공개 강화, 민자도로 요금 인하 등 민자사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장치들도 배치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음
-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투자비를 들여 제안하는 특성상 섣부른 정보공개는 자칫 민간사업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민자사업의 사용료 인하는 민자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될 수 있는데, 사용료 인하에 따른 보전 장치가 없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민자사업을 제안하고 나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임
- 이에 따라 업계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활성화 방안과 이에 반하는 방안이 상충하고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

◈ 북한 인프라개발 10년간 306조원 필요

○ 3월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힘

○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기간(10년)에 신규로 건설하거나 현대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함

<주요내용>

- 시설별 건설사업비로 보면, 주택이 106조 8,000억원 수준으로 가장 크고,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 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 7,000억원 규모 순
-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서 작성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를 바탕으로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비를 추정
-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약 30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이들 재원을 북한내에서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

<북한 주요 인프라의 건설사업비 추정>

구분	건설사업비		비고
	금액	비중(%)	
주택	106조 8,156억원	34.9	매년 10만호 공급, 10년간 총 100만호 공급 가정
전력.에너지	25조 7,972억원	8.4	화력 및 수력 발전소, 석탄광, 석유 정제시설 등 현대화, 천연가스망 연계 등
도로	43조 784억원	14.1	기존 고속도로 및 기간 도로 개보수 및 신설, 경의축 고속도로 건설 등
철도	41조 4,332억원	13.5	기존 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 경의축 고속철도 건설 등
항만물류	8조 5,328억원	2.9	22개 항만물류 개선사업
공항	1조, 6,477억원	0.5	평양국제공항, 청진(어랑)공항, 함흥(선덕)공항, 삼지연공항 등 현대화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23.5	대규모 산업단지 8개(개성, 라선, 신의주, 해주, 남포, 원산, 김책, 청진) 지방급 경제개발구 22개
관광단지	5조, 1,053억원	1.7	금강산-원산, 칠보산, 백두산 등 관광단지 개발 등
농업개발	1조 6,800억원	0.5	농약공장, 종자기지, 종합농기계, 축산업 등
총계	306조 2,102억원	10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701호(2019.3.25.)

◈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발표

○ 정부는 3월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는 지난 1월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관련 제도가 건의돼 도입된 것으로, 이후 기획재정부가 먼저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행정규칙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검토 결과272건 중 83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한다고 이 날 밝힘

○ 정부는 향후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1단계로 부처별로 규제 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며, 2단계로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을 정비해 올해 모두 1780여개를 손질할 계획

○ 한편, 금번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시범실시 결과, 건설업 관련 국가계약제도와 조달분야 규제 개선 내용이 다수 포함돼 건설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주요내용>

'국가계약 분야' 개선사항

❒ **PQ 신인도 항목 개선**

- 신인도 항목의 가점폭(최대 +3점)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감점폭 축소(현행 -10점 → -5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2점) 폐지
- 신인도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추가.제외하지 못하도록 개선하여 계약참가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개선**

- 균형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균형가격 선정기준을 입찰가격 상위 40%~80% 평균 → 20%~80% 평균으로 개선
- 동점자 발생시 입찰가격이 낮은 자보다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우선 낙찰되도록 개선

  * (현행 동점자 처리기준)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 입찰금액이 낮은 자 → 최근 1년간 수주건수가 낮은 자

❒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선**

- 법령상 지출의무가 부여된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등)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선

❒ **선금 제도 개선**

- 기업이 신청할 경우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선금 지급 허용(현재 잔여이행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선금 지급 불가)
- 기업이 선금의 조기정산 완료에 대한 증명서류 요청시 발주기관의 발급을 의무화
  * 일부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기간 조기 만료시 보증수수료 일부를 반환 → 기업의 입장에서 수수료 절감 가능

❒ **국가계약 참여시 기업의 불편사항 개선**

- 산출내역서 제출 시 위·변조 방지 방법으로 인감 간인 외 천공방식 등을 허용하여 입찰 참가기업의 편의성 제고
- 1식단가*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시하는 등 관련 지침 마련
  * 발주기관이 공사물량내역서 작성시 세부공종별로 단가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1식'으로 표현하여 작성하는 단가

'조달 분야' 개선사항

❒ **참가제한 완화**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

폐지	제도 개선
- 입찰신청서 제출 후 未참가자(1회계연도 3회이상) - 적격.종합심사 자료 未 제출·심사포기자 - 턴키공사 실시설계서 未제출자 등	- 고의 무효입찰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담합 자진신고업체의 경우 처벌 면제·경감 조항을 마련하여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권리구제 강화

❒ **보증부담 경감**

- (입찰보증) 계약미체결 우려가 큰 자에 한하여 보증금을 예외적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하여 입찰 참가기업의 부담 경감
  * (현행) 납부 원칙 + 예외 면제(지급각서 제출) → (개선) 지급각서 제출 원칙 + 예외 납부
- (계약·이행보증) 종합심사낙찰제·기술형입찰 등 큰 규모의 공사의 경우*에도 적절한

보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종합심사낙찰제·기술형입찰제에 대해서는 계약보증 대신 이행보증토록 의무화

** (계약보증) 계약금액의 15%를 보증금 납부
(이행보증) 보증이행업체의 대체시공 또는 계약금액의 40% 상당금액 납부

❒ **조달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불편사항 개선**

- 계약체결 이후 착공까지 적정 준비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준비기간(예시: 20일)을 명문화
- 국가계약에 대한 이의신청·분쟁조정 가능기간 및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불이익 해소

* (현행) 이의신청 대상: 30억원 이상 공사
이의신청 기간: 원인행위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안날로부터 15일 이내
(분쟁조정신청은 이의신청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3월27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개정안 주요내용>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 최저임금 인상 등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와 법정경비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
-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구체화

※ 자연재난, 전쟁, 사변, 테러, 폭동 등, 법 개정('18.12.24.)의 위임사항 반영

- 발주기관이 원가산정을 오류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및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과징금(부정당 제재 5~7개월)으로 대체 가능
- 지체상금의 최대 납부금액을 계약금액의 30%로 제한

※ 계약금액×지체요율(1000분의 0.5~2.5)×지체일수 산정, 상한제 없어 지속증가

❒ **계약의 공정성·명확성 확보 등을 통한 계약질서 제고**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공정성 확보
- 일괄입찰을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한자의 참가자격은 분담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신고 등의 자격을 갖추도록 명문화

❒ **계약집행의 책임성 및 부정행위자 등의 제재 강화 등**

- 조세포탈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법 제39조제4항, '18.12.24.개정) 대상을 구체화하여 지방계약의 실효성 제고 ※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
-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뇌물 제공업자·담합을 한 업자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최대 2년)의 감경을 배제

- 부정당업자 제재 불이익 대비 과징금 부과금액이 낮아 형평성 문제 소지로 하도급 위반 등의 과징금 부과요율 현실화

※ 1억 공사 승인 없이 하도급 : 제재기간 5~7월, 과징금 300만원(3%)

사유	현행	개선(안)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3%	6%
· 전부 또는 주요부분 1인에게 하도급	5%	10%
· 안전소홀에 따른 사업장 내외 2명 이상 인명피해	5%	10%
· 안전소홀로 근로자 10인 이상 사망	7.5%	10%

- 시행령에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일부 사유가 법률로 상향(법 제31조, '18.12.24.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조문 정비 등

◈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 확정

○ 정부는 3월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함

○ 정부는 내년 예산을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기로 했음

○ 이를 위한 4대 중점투자 분야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을 선정하고,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며,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는 △국민편의 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함

○ 한편, 지침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오는 29일 각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 주요내용>

❒ '4대 중점 투자분야'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SOC, 노후 SOC 안전투자, 신기술을 접목한 SOC 등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투자 확대
- 신북방·신남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바우처 확대·개편 및 전문인력 양성, 건설·플랜트 해외 수주 등 수출지원 강화
- 노후 기반시설(도로, 열수송관, 가스배관 등) 안전 점검 및 개선, 유해 화학물질·생활주변 방사선 관리 등 생활속 안전 위해요소 제거

❒ SOC 분야 '중점 투자방향'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착수와 중장기 재정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
- 70~80년대 집중 건설된 SOC의 노후화에 대응한 사전적·종합적 진단체계 구축 및 국민체감형 안전투자 확대하고, 이를 위해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하천 유지보수, 항만안전 제고 등 기존 시설물 안전 투자 지속·확대 및 운영시스템 개선
-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및 주요 간선망 구축 지속 투자, 이를 위해 주요 순환도로망 및 철도망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 및 도로.철도.항만.항공 등 교통수단 간 네트워크를 강화
- 차세대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노후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 및 태풍·지진 대응을 위한 항만안전 사업 강화

❒ **SOC 분야 '지출효율화 계획'**

- 투자 우선순위 점검을 통한 사업별 투자시기 재조정 : 기존시설 연계, 선형개량 등을 통해 신규노선 수요 최대한 억제
- 민간·공기업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재원 조달 방안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 3월26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18.6)'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을 포함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저가 하도급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둠

<주요 개정내용>

❒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 확대**

-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

❒ **직접시공 의무대상 아닌 공사의 직접시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사실적에 가산토록 함

❒ **대형 공사의 직접시공 확대 추진**

-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등에 대해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을 통해 핵심공종 직

접시공 조건 부여 등을 병행하여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

❒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예가대비 60% → 64%)

  * (현행)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 축소

- (현재) (5억 이상) 1명/1개소, (5억 미만) 1명/3개소 중복배치 허용
  → **(개선)** (5억 이상) 1명/1개소, (3억~5억) 1명/2개소, (3억미만) 1명/3개소